



의안번호	제 2008 - 19 호
의 결 연 월 일	2008. 11. 11. (제12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기준안 공청회 추진경과 보고	1
1. 개요	1
2. 기본 계획	1
3. 참석자	1
4. 진행 순서	2
II.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3
1. 개요	3
2. 관련 규정	3
III.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업무지원	4
1. 회의 지원	4
2. 통계분석 지원	5
3. 뇌물죄 추가 양형자료조사	7
IV.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	9
1. 개요	9
2. 미국 양형위원회 방문	9
3. 세부일정(안)	9

I. 양형기준안 공청회 추진경과 보고

1. 개요

- 위원회 11차 회의(2008. 10. 10.)에서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운영지원단에서 추진 중인 공청회 개최 준비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2. 기본 계획

가. 명칭, 주최

- 명 칭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차 공청회
- 살인죄, 뇌물죄, 성범죄 -
- 주 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나. 일시, 장소

- 일 시 : 2008. 11. 24.(월) 14:00 ~ 18:40
- 장 소 : 서울법원 종합청사 서관 4층 제417호 형사대법정
(수용인원 : 최대 200명)

3. 참석자

가. 진행 관련

- 인사 말씀 : 양형위원회 위원장
- 공청회 사회 : 상임위원
- 개회식 진행 : 운영지원단장

나. 양형기준안 발표자

- 수석전문위원

다. 지정토론자(6인)

- 법 관 : 김환수 사법연수원 교수
- 검 사 : 김현철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 변 호 사 : 신현호 법조윤리협의회 주무간사
- 학 계 : 이상원 서울대학교 교수
- 시민단체 :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학교 교수)
 - 이운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4. 진행 순서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3:30 ~ 14:00	참가자 등록 및 자료 배포	
14:00 ~ 14:10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운영지원단장
14:10 ~ 14:20	인사말	양형위원회 위원장
14:20 ~ 15:10	양형기준안 발표	수석전문위원
15:10 ~ 16:00	살인범죄 기준안 토론	
16:00 ~ 16:20	휴 식	
16:20 ~ 17:10	뇌물범죄 기준안 토론	
17:10 ~ 18:00	성범죄 기준안 토론	
18:00 ~ 18:30	종합토론 및 방청객 질의	
18:30 ~ 18:40	폐회식	

II.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절차를 객관화·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

Ⅲ.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업무지원

1. 회의 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은 소위원회 회의와 전문위원 전체회의 및 팀별회의의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소위원회 회의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소위원회 회의	제1차	2008. 10. 15. 19:40	○ 살인범죄 양형기준초안 심의 ○ 양형기준초안 관련 쟁점 심의
	제2차	2008. 10. 28. 09:40	○ 살인범죄 양형기준초안 심의 ○ 뇌물범죄 양형기준초안 심의 ○ 성범죄 양형기준초안 심의
	제3차	2008. 11. 5. 19:30	○ 살인범죄 양형기준초안 심의 ○ 뇌물범죄 양형기준초안 심의 ○ 성범죄 양형기준초안 심의

- 전문위원 회의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2차	2008. 11. 3. 15:30	○ 경합범·집행유예 기준 ○ 뇌물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성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팀 회의	제19차	2008. 10. 27. 18:30	○ 성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2팀 회의	제11차	2008. 10. 23. 14:15	○ 살인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뇌물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2. 통계분석 지원

가. 개요

- 구체적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전문위원단의 효율적인 연구업무를 지원

나. 지원 내역

- 주무 전문위원의 요청에 따라, 살인죄, 뇌물죄, 성범죄, 횡령·배임죄 등에 관한 추가 통계분석자료를 운영지원단 통계분석과 선창민 통계분석실무관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음

[1] 살인범죄

- ▶ 살인, 살인미수, 존속살해
 - 세부죄명별 종국내역 및 형량분포(항소심 확정형 기준, 징역형 집행여부에 따른 구분)
 - 계획성 유무, 범행동기(동정 동기, 비난 동기)에 따른 형량분포
 - 세부죄명별 형량 및 집행여부 분석
 - 37조 후단 경합범 비율
 - 형량 및 징역형 집행여부에 대한 양형인자별 분산분석, 교차분석, 상관 분석 및 회귀분석
- ▶ 살인, 존속살해, 영아살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자살 교사·방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살인예비·음모, 살인미수
 - 유형별 징역형 전체 및 실형/집행유예 구분에 의한 기술통계
 - 양형인자별 형량분석 및 기술통계
 - 유형별 형량에 대한 회귀분석(유의한 인자 및 법률상 가중·감경인자 포함)

- ▶ 살인, 살인미수
 - 형량 분석 및 회귀분석
 - 계획성 여부에 따른 기술통계 및 구간값(± 15 , ± 25)
 - 살인죄(기수)에 대한 범행계획 및 피해자 유발 유무에 따른 형량분포
 - 살인죄(기수)에 대한 고의 종류에 따른 형량분포

[2] 뇌물범죄

- ▶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위반(뇌물)
 - 전체 1심에 대한 형종 및 형량분포
 - 양형인자에 따른 형량분석, 징역형 집행여부 분석,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 뇌물액수별 형량분포, 형량분석
(3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 사건 기준일(2006. 3. 이전/이후)에 따른 형량분포, 형량분석

- ▶ 뇌물공여
 - 전체 1심에 대한 형종 및 형량분포
 - 양형인자에 따른 형량분석, 징역형 집행여부 분석,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 양형인자, 벌금액수에 따른 1심 벌금형의 분포현황
 - 뇌물액수별 형량, 징역형 집행여부 분석,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2] 성범죄

- ▶ 강간, 강제추행 등
 - 양형인자에 따른 형량, 형종, 집행여부 분석 및 형량분포 현황
 - 형량, 형종, 집행여부에 대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 단일범/경합범 구분에 따른 형량분석, 형종분석 및 형량분포 현황
 - 동종전과에 따른 형량분포
 -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건에 대한 양형인자 분석

[4] 횡령·배임범죄

- ▶ 횡령, 업무상횡령, 특경가법위반(횡령)
- ▶ 배임, 업무상배임, 특경가법위반(배임)
 - 세부죄명별 형량분포 및 형량분석
 - 횡령·배임금액별 평균형량과 형량분포 현황
(3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7천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30억 원 미만, 50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 500억 원 미만, 1천억 원 미만, 1천억 원 이상)
 - 전과, 경합범에 따른 평균형량 및 형량분포 현황
 - 범행수법에 따른 형종, 형량 및 징역형 집행여부 분석

3. 뇌물죄 추가 양형자료조사

가. 개요

- 전문위원 회의결과에 따라, 뇌물범죄 중 뇌물수수를 제외한 뇌물공여, 알선수뢰, 제3자 뇌물교부·취득죄 등에 대해 추가 양형자료조사를 실시
- 단일범 위주의 조사를 통해 개별범죄에 고유한 특성 및 선고형 분포 파악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확보·제공

나. 조사내역

- 조사대상
 - 판결문을 대상으로 조사
 - 공범 및 이중 경합범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함
- 조사방법
 - 기존의 조사표 작성방식에 따라 조사 시행

- 뇌물공여 : 주관적 인자 및 범행계기 등은 증뢰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공무원인 수뢰자에 관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조사표의 양식에 따라 기재
- 알선수뢰 : 직급, 담당직무, 직무결정권한의 정도를 알선수뢰자와 피청탁자로 구분하여 조사
- 제3자 뇌물교부취득 : 증뢰자, 수뢰자 및 제3자를 기준으로 조사할 부분을 적절히 지정하여 조사

○ 조사건수

죄명	조사건수
뇌물공여	161
알선뇌물수수	14
제3자 뇌물교부	24
제3자 뇌물취득	34
합 계	233

○ 조사일정

- 판결문 추출 : 10. 24.
- 양형자료조사 : 10. 27. ~ 28.
- 양형자료입력 : 10. 28. ~ 29.
- 양형자료분석 : 10. 30. ~ 31.

IV.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

1. 개요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는 2007. 4.경 발족한 이래 그동안 상설조직으로서의 체제 완비와 양형기준제 관련 각종 연구 및 양형자료 수집 등 내실을 다지는 데에 중점을 두어 왔음
- 양형위원회가 향후 양형기준 설정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양형기준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양형위원회의 각종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의 공식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양형기준을 대외에 홍보하고,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증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2. 미국 양형위원회 방문

- 방 문 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 기 간 : 2008. 11. 29. ~ 12. 7.
- 국 가 : 미국 (워싱턴 D.C., 뉴욕)
- 방문기관 : 미국 연방양형위원회, 워싱턴 D.C. 양형위원회,
연방 제2 항소법원, 뉴욕주 남부연방법원

3. 세부일정(안)

일 시	방문기관	내용
11. 29. ~ 30.	출국	
12. 1.	연방 제2항소법원	·연방제2항소법원장 면담 ·연방제2항소법원 판사 접견

12. 2.	뉴욕주 남부연방법원	·뉴욕주 남부 연방법원장 면담 ·뉴욕주 남부 연방법원 판사 접견
12. 3.	이동	
12. 4.	미국 연방양형위원회	·미국 연방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미국 연방양형위원회 사무총장 접견
12. 5.	워싱턴 D.C. 양형위원회	·워싱턴 D.C.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워싱턴 D.C. 양형위원회 사무총장 접견
12. 6. ~ 7.	귀국	